

집합투자기구 공시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칭기스칸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변경 사유** :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	<u>2010.07.15 : 투자신탁 최초 설정</u> <u>2010.09.03 :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나. 환매 3)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90일 이상: 없음	나. 환매 3) 환매수수료 <u>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환매수수료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90일 이상: 없음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u>-환매수수료</u> <u>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